

'22년 경찰공무원(경정, 경감) 정기 승진시험

- 2교시(11:30 ~ 12:50) -

목 차

【 형 사 소 송 법(경정) 】 ----- 1

【 경 찰 행 정 법(경감) 】 ----- 3

응시자 유의사항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경 찰 청

사이버경찰청 : <http://www.police.go.kr>

원서접수사이트 : <http://gosi.police.go.kr>

과목 : 형사소송법(경정)

답안 작성시 문제는 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

[문제 I]

사법경찰관 P는 피해자 A의 고소로 甲이 2021. 5. 6.에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저지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상 카메라이용촬영 혐의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수사하면서 甲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甲의 주거지와 직장을 탐문하였지만, 甲은 직장을 그만둔 채 소재를 감추었다. 사법경찰관 P는 甲의 소재를 계속해서 파악하던 중, 2021. 7. 6. 21:30경 甲의 내연녀 乙의 주거지 주변 노상에서 우연히 甲을 발견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긴급체포하였다.

다음날 오전 10:00경 사법경찰관 P는 甲과 동행하여 乙의 주거지에서 乙의 참여하에 그곳에 숨겨져 있던 甲의 휴대전화기를 발견하였으나 甲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그대로 甲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하였다. 같은 날 20:00경 발부된 사후영장에는 계속 압수의 필요성으로 ‘피해자 A에 대한 범죄혐의의 상당성’ 외에도 ‘여죄수사의 필요성’ 및 ‘상습범의 가능성’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법경찰관 P는 압수한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 A에 대한 자료 외에도 甲이 2021. 1.경부터 2021. 4.경까지 사이에 저지른 피해자 B, C, D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관한 추가자료들을 확보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甲은 디지털포렌식 실시 전과 추가자료 확보 당시 참여권을 통지받았으나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한편, 우연히 피해자 A에 대한 甲의 범행현장을 목격한 丙은 사법경찰관 P의 요구에 따라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甲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된 후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단순히 보복을 염려해 증언을 거부하였다.

※ 전체 논점정리와 결론은 별도로 쓰지 말고, 각 문항별로 답안을 작성할 것

1. 사법경찰관 P가 甲을 긴급체포한 것은 적법한가? (10점)
2. 사법경찰관 P에 의한 甲의 휴대전화기 압수 및 피해자 B, C, D에 대한 추가자료들의 확보는 적법한가? (20점)
3. 丙의 증언거부권 행사가 정당한지 검토하고 丙이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논하시오. (10점)
4. 만일, 乙이 甲과 별개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기소되어 甲과 병합심리를 받던 중 자신에 대한 피고인신문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영상들은 甲이 피해자 A를 직접 촬영했다고 하면서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이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 (10점)

[문제 II] 다음을 약술하시오.

1. 진술거부권의 내용과 효과 (30점)
2. 보강이 필요한 자백과 보강증거의 자격 (20점)

<참고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과목 : 경찰행정법(경감)

답안 작성시 문제는 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

[문제 I]

甲은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시끄러운 음악 소리 등으로 이웃 주민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112 신고가 있어 왔던 사람이다.

한편, 이웃주민인 乙은 甲의 이러한 행위로 잠을 이루지 못해 불면증에 시달려 정신과에서 신경쇠약과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정 무렵 甲의 집에서 심한 고성과 시끄러운 음악소리가 들리자 乙은 “옆집의 심한 고성과 음악 소리 때문에 고통스럽다. 제발 도와 달라”고 호소하며 112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丙, 丁은 甲의 집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알 수 없는 고함소리가 나서 이러한 소란행위를 막고 乙을 포함한 인근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甲을 만나려 하였다. 그러나 甲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소란행위를 멈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욕설을 하였다. 이에 丙, 丁은 일단 甲을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긴급히 필요하다 판단하고 甲의 집으로 통하는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기차단기를 내렸다.

※ 전체 논점정리와 결론은 별도로 쓰지 말고, 각 문항별로 답안을 작성할 것

1. 乙은 甲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검토하시오. (15점)
2. 경찰관 丙, 丁의 전기차단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오. (20점)
3. 甲은 “경찰관 丙, 丁의 전기차단행위가 처분에 해당하고,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甲의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시오. (15점)

[문제 II] 다음을 약술하시오.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30점)
2. 행정의 자동화 결정 (20점)

<참고조문>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